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가둥기의 본둥기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20○○. ○○. 접수 제○○○○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20○○. ○○. ○○.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2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 20〇〇. 〇. 〇〇.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〇〇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- 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4.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관련하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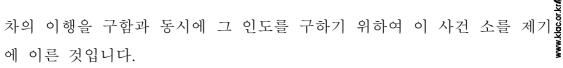
- 가.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○○. ○. ○. 같은 달 ○○.부터 향후 ○년간 피고 장 가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(갑 제1호증 계약서 참조).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그 가구 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하였는바, 피고는 계약 만료일 현재 미지급대금이 2억원이 넘는 경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고,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20○○. ○. ○○. 접수 제○○○호로 20○○. ○. ○. 대물변제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를 마치도록 해주었습니다(갑 제2호증 등기사항증명서 참조). 위 가등기를 마친 이후 피고는 20○○. ○○. ○○은행으로부터 금 30,000,000원을 차용한 이후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접수 20○○. ○○. ○. 제○○○호로 채권최고액 40,000,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.
- 나. 피고는 20○○. ○. ○○. 원고에게 위 계약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가구 대금 금 32,000,000원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(갑 제3호증 대물변제 약정서 참조).
- 다. 그러나 피고는 현재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.

2. 건물명도청구와 관련하여

- 가. 피고는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(갑 제4호증 주민 등록등본 참조).
- 나.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이라 함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소유권이라 할 것입니다.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의 채무 대신 별지목록 기재 건물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등기와 동시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(갑 제3호증 대물변제 약정서 참조).
- 다. 따라서,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고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월 임료가 ○○원에 해당하므로(갑 제5호증 임료확인서 참조)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○○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 또한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.

3. 맺음말

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



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계약서

1.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3호증 대물변제 약정서

1. 갑 제4호증 주민등록표등본

1. 갑 제5호증 임료확인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건축물대장등본 1통

1. 토지대장등본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

부동산의 표시

- 1.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-ㅇㅇ 대 157.4㎡.
- 2.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주택 74.82㎡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 www.kg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인 지

- 1.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- 2.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: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함(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). 따라서 등기이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에 명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함.
- 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